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기반의

납품대금 연동제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

컨설팅 분야

안내자료

2024.09. ver.3.1

● KPC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kpc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컨설팅센터

* 본 저작물은 KPO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부분도 배포, 인용 또는 복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서는 프레젠테이션의 개요를 제공하며 구구 해설 및 보충 설명이 없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
컨설팅 분야
안내자료

*한국생산성본부

I. 납품대금 연동제 개요

1. 납품대금 연동제 개념
2.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대효과
3. 납품대금 연동 절차
4.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근거

II. 납품대금 연동 방식

III.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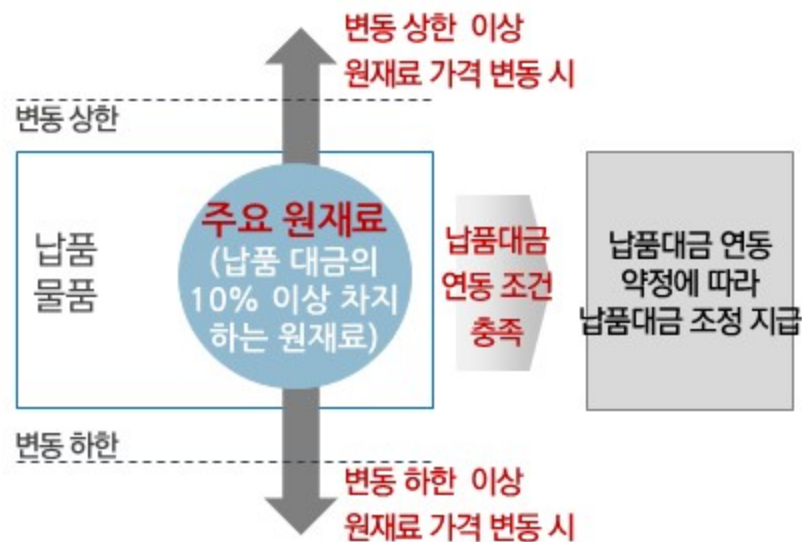
1. 납품대금 연동제 개념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변동 시 위탁-수탁 기업 간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제 란?

연동제 개념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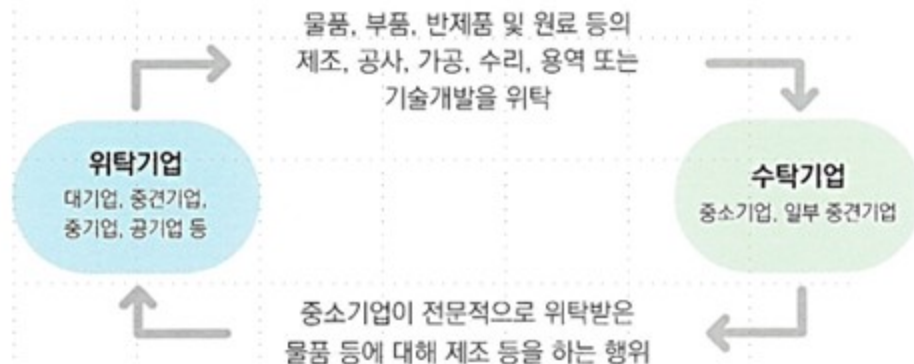
※ 변동 상/하한: 연동 약정 체결 당사자 간 협의한 변동 폭의 범위 (10% 이내 범위)

납품대금 연동 대상자는 누구?

연동 당사자

물품, 부품, 반제품,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 등을 위탁/수탁한 기업

- 위탁기업 : 위탁한 대·중견·중기업(*소기업 제외)
- 수탁기업 : 수탁 받은 중소기업 (일부 중견기업)



2.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대효과

수탁기업(중소기업)은 주요 원재료비 가격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위탁기업(대·중견·중기업)은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

수탁기업에게 좋은 점은?

원가변동 대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였어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거래가 끊길까봐
납품단가 올려달라고 말을 못해요..

-A사장님-



최소한 원자재 값 변동분만큼은
반영해줘야 되는거 아니가요?

-B사장님-

원자재 값 변동이 심할 때
가장 어려운곳이 중소기업입니다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 주세요

-C사장님-



위탁기업에게 좋은 점은?

동반성장

수탁기업과의 관계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1. 공급망을 안정화
2. 동반성장지수/평가에 인정
3.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정부포상 등

자율도입 사례

posco

- 2000년부터 납품단가 연동제 특별약관 운영
- 2022년 기준 전체 자재 구매의 약 30%에 대해 연동제
(출처: 포스코 동반성장그룹, 2022)



신성델타테크 (주)

SHINSUNG DELTATECH CO., LTD. (*LG전자 1차 협력업체)

- 2010년부터 원재료 가격 연동제 도입
- 2차 협력업체 부품의 납품대금을 원재료 가격에 연동
(출처: 동아일보, 2023)

*source : 납품대금 연동제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24)

[참고] 동반성장 평가에 납품대금연동제 실적 반영

납품대금 연동제의 자율적 확산을 위해 도입·확산 및 계약체결 실적 등을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

동반성장지수 (민간대기업)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지표 개선안

※ 전체 평가지표(17개)의 배점 변동 없음

12 납품대금 조정

○ 납품대금 연동제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지표 정비

현행		개선																																				
평가 지표	배 점	평가 지표	배 점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20																																			
	25		20																																			
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 - 시행운영 참여(1.0점), 상시모집 참여(0.5점)		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 -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 기업수 <table border="1" style="font-size: small;"> <tr> <td>합수</td> <td>20</td> <td>16</td> <td>12</td> <td>09</td> <td>06</td> <td>03</td> </tr> <tr> <td>4Q이상</td> <td>50%</td> <td>35%</td> <td>21%</td> <td>11%</td> <td>5%</td> <td>1%</td> </tr> <tr> <td>3Q이상</td> <td>40%</td> <td>34%</td> <td>20%</td> <td>10%</td> <td>4%</td> <td></td> </tr> <tr> <td>중간 7점 이상</td> <td>20%</td> <td>15%</td> <td>10%</td> <td>6%</td> <td>2%</td> <td>1%</td> </tr> <tr> <td></td> <td>19%</td> <td>14%</td> <td>9%</td> <td>5%</td> <td></td> <td></td> </tr> </table>		합수	20	16	12	09	06	03	4Q이상	50%	35%	21%	11%	5%	1%	3Q이상	40%	34%	20%	10%	4%		중간 7점 이상	20%	15%	10%	6%	2%	1%		19%	14%	9%	5%		
합수	20	16	12	09	06	03																																
4Q이상	50%	35%	21%	11%	5%	1%																																
3Q이상	40%	34%	20%	10%	4%																																	
중간 7점 이상	20%	15%	10%	6%	2%	1%																																
	19%	14%	9%	5%																																		
②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 (수탁기업당 0.1~0.15점)		②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 - 수탁기업당 0.1점~0.2점 * (대기업 : 수탁기업당 0.1점 / 중견기업 : 수탁기업당 0.2점)																																				
③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운영 실적 (수탁기업당 0.1~0.15점)		③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운영 실적 - 수탁기업당 0.1점~0.2점 * (대기업 : 수탁기업당 0.1점 / 중견기업 : 수탁기업당 0.2점)																																				
1. 총 합산점수는 3점 이내에서 인정 2. 대기업 등에 납품대금 연동제 또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 운영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실적 증빙 서류를 통보하여 제출(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선제적으로 조정 한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		1. 총 합산점수는 3점 이내에서 인정 2.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은 법정 기제 사안이 확인된 연도, 계약서로 확인하여 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인정																																				

*source :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 지표 개선안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평가 (공공기관/공기업)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

< 2024년도 평가지표 및 배점 >

□ 세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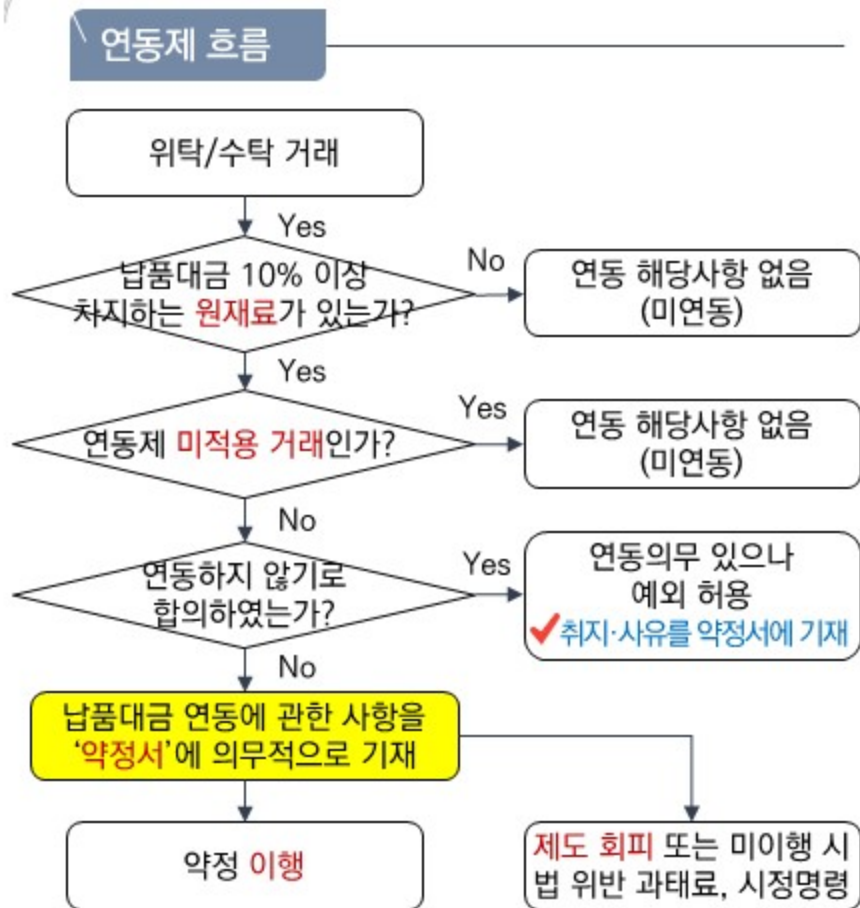
구분	단위지표	세부지표	비계량	배 점
1	동반성장 전략수립 및 체계	① 추진목표-전략 등의 적정성-구체성	비계량	2.0
		② 기관의 동반성장 활동 추진 노력	비계량	4.0
		③ 동반성장 전담 운영체계 구축 여부	계량	1.0
		④ 임직원 성과지표 반영 여부	계량	0.5
		⑤ 추진실적 보고서 타 기관 공유	계량	0.5
2	공정거래 문화조성 및 확산	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확산	계량	2.0
		② 공정거래 관련 임직원 교육	계량	1.0
		③ 공급원가 인상분 반영 노력	비계량	3.0
		④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 노력	비계량	2.0

*source :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침 (중소벤처기업부)

3. 납품대금 연동 절차

주요 원재료 유무, 연동제 미적용거래 여부, 연동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납품대금 연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용어 해설

*원재료

1. 원료와 재료를 포괄
2.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한정하지 않음

*미적용 거래

1. 위탁기업이 소기업
2. 단기계약 (90일 이내)
3. 소액계약 (1억원 이하)

*약정서 (의무적 작성)

1. 물품 등의 제조 위탁 시 작성
2. 납품대금 연동/미연동 사항 작성
 - ↳ (방식1) 기본계약서에 연동사항 기재
 - ↳ (방식2) 별도 약정서(계약서)로 작성

*이행

1.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확인
2. 납품대금 조정 지급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구분	기재
1. 물품등의 명칭	동 계약서
2. 주요 원재료	동 계약서
3.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일별
4.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조정일의 전전월 (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월 (평균)
5. 조정요건	모든
6. 조정주기	1기
7. 조정일	매월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매월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일 납품단가(단위: 1개) = 비교시점의 동 기준가격 × 동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

*제도 회피

1. 쪼개기 위탁 계약
2. 위탁거래 임의적 취소·변경
3. 미연동 합의 유도 회유 등

4. 납품대금 연동제 법적 근거

납품대금 연동제는 약칭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 (2023.10.4.)

법률

상생협력법

* (공식명칭)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2023.10. 4.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개정사항 시행



제21조 (약정서의 발급)

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준수사항)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1조 (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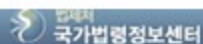
제43조 (과태료)

시행령 (대통령령)

상생협력법 시행령

* (공식명칭)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상생협력법에서 제정 위임한 시행령 정의사항 시행



제14조 (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source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24.08.조회)

[참고] 연동 계약서

위탁-수탁기업 간 표준 연동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연동계약서' 본문과 '연동표'를 작성

연동 계약서의 형태는?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 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 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 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 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 하도급 계약 등 명칭 :
- ❖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기업"이란 원사업자에게서 물품등의 제조·수급을 위탁받고 있는 중소기업

년 월 일

원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수급사업자등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1] 하도급대금 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4. 원재료 가격의 변동을 산정할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일	
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9.1. 반영비율	
10. 기타 사항	

✓위탁-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합의한 사항 기재
(*계약과 동일한 효력)

[첨부2] 하도급대금 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대상 원재료	원재료 가격		하도급단가/대금		조정대금 반영일	원사업자등 확인	수급사업자등 확인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조정전 금액	조정후 금액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하도급대금 등이
조정된 사항 기재

*source : 납품대금 연동제 사업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pis>)

[참고] 미연동 계약서

위탁-수탁기업 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기본약정서에 미연동 사항을 기재하거나 '미연동 계약서'를 작성

미연동 계약서의 형태는?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 대금"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위탁·위탁계약(이하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 하도급 계약 등 명칭 :
- ❖ 하도급계약 등의 체결 일자 :
- ❖ 미연동 대상, 목적물 등 또는 물품 등의 명칭 :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명칭 :
- ❖ 협의 개요 :

미연동 사유

원사업자명	
수급사업자명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3월 15일

원사업자명

상호 또는 명칭 : ○○○물산(주)

전화번호 : 02-1234-0000

주 소 : 서울시 000 000로 00

대표자 성명 : ○○○ (인)

사업자(법인) 번호 : 000-00-00000

수급사업자명

상호 또는 명칭 : ○○산업(주)

전화번호 : 031-4321-0000

주 소 : 경기도 00시 000로 00

대표자 성명 : ○○○ (인)

사업자(법인) 번호 : 000-00-00000

1.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주요 원재료 중 납품대금 미연동 하기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기재

2. 미연동 협의 개요

- ✓ 협의일시, 방법, 위·수탁기업의 협의 책임자 성명·직위 등을 기재
- ✓ 권한 있는 책임자가 참여하여 회의개최, 의견교환 등 협의 진행

* 상생협력법 제21조(약정서의 발급)

②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적기 위하여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기업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미연동 합의를 악용한 탈법행위

- 미연동 합의를 하는 내용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칙,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
- 표준 미연동계약서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미연동 합의와 관련한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수탁기업은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기업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함

3. 미연동 사유

- ✓ 미연동 사유는 위탁·수탁기업이 각각 기재
- ✓ 미연동 사유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음

*source : 납품대금 연동제 사업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pis>)

Fair Transaction

납품대금 연동제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
컨설팅 분야
안내자료

*한국생산성본부

I. 납품대금 연동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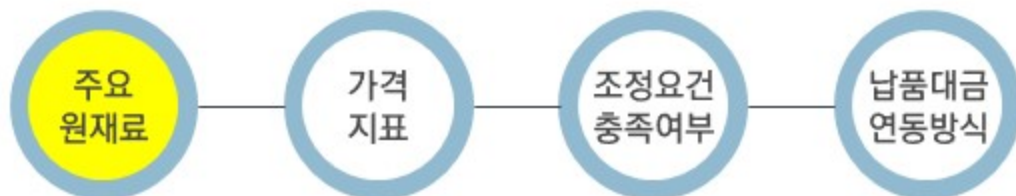
II. 납품대금 연동 방식

1. 주요 원재료 확인
2. 원재료 가격지표 선정
3. 납품대금 조정요건 충족여부 판단
4. 납품대금 연동

III.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

1. 주요 원재료 확인

원재료 금액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고, 위탁 받은 생산에 사용되면 주요 원재료로 인정됨



주요 원재료 인정되는 요건은?

원재료 요건 ㉠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원재료 요건 ㉡

해당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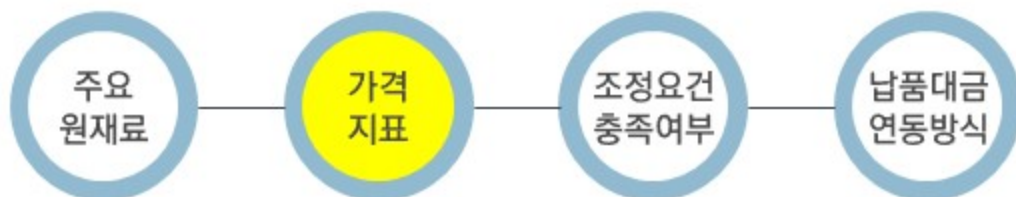
※ 주요 원재료가 복수인 경우 모두 연동제 적용대상 가능

주요 원재료의 범위는?

- ①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
 - ↳ 천연재료 : 금, 철, 구리, 알루미늄, 고무, 연, 아연, 주석, 니켈, 석탄, 원유, 원목 등
 - ↳ 화합물 :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비닐(PVC) 등
- ②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 ↳ 금속강, 금속판, 골재, 목재, 시멘트, 레미콘, 콘크리트, 선철, 아스팔트, 화학섬유, 합성수지 등
- ③ 수탁기업이 위탁 받은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중간재
 -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부품, 기계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나사, 강철, 고무 타이어, 전기 센서 및 램프, 시스템반도체,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모듈, 반제품 등
- ④ 그 밖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원재료

2. 원재료 가격지표 선정

주요 원재료의 가격지표는 위탁-수탁기업 협의를 통해 공신력 기관의 고시 가격 또는 기존 거래이력에 기반한 지표로 선정



가격의 판단지표는?

지표 기본요건

- 원재료 가격의 상승/하락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설정

지표의 유형

- (유형1)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 (유형2) 위탁기업, 수탁기업, 원재료의 판매처 등 당사자 간 거래 이력에 기반한 지표

가격지표 예시를 들자면?

가격지표 (유형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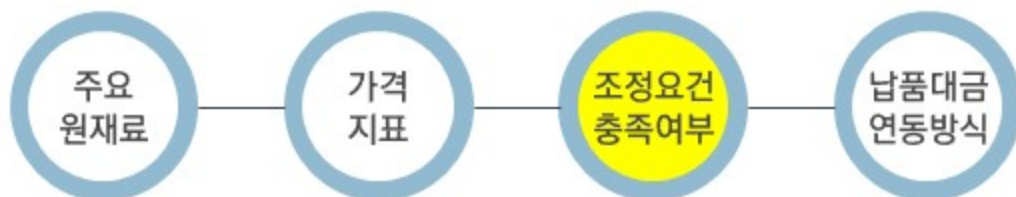
- 공공기관 게시 웹사이트 : ex. e나라지표, 조달청, 한국수입협회
- 국제적인 공식거래소 가격 : ex. 런던금속거래소 가격
- 해외 판매처의 원재료 고시 가격 : ex. 합성고무 판매처 해외 A사
- 전문기관의 가격 지수 : ex. 건설기술연구원 제공 건설공사비 지수

가격지표 (유형2)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원재료 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 원재료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가격 (위탁기업 확인가능한)
- 그 외, 위탁-수탁기업 간 협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 선정한 가격 (*약정서, 원가내역서, 견적서 등)

3. 납품대금 조정요건 충족여부 판단

주요 원재료 가격지표의 변동폭이 조정주기 시점에서 조정요건 이상/이하로 변동 시 납품대금 조정요건을 충족



가격 변동 폭 10% 이내 범위 란?

변동 폭의 근거

상생협력법 제2조(정의)

13. ...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 조정...

'10% 이내' 예시

- ex. -3% 이하 또는 3% 이상 → 6% 간격 폭 (적절)
- ex. -5% 이하 또는 5% 이상 → 10% 간격 폭 (적절)
- ex. -10% 이하 또는 10% 이상 → 20% 간격 폭 (부적절)

가격 변동 충족 여부 판단은 어떻게?



- 1)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연동 **조정주기**를 (3개월)로 기 협의
- 2) **조정요건**은 원재료 가격지표가 ($\pm 3\%$) 이상 변동 시
 ↳ ex. $\pm 3\%$: 변동 폭 10% 이내로서 조정요건 충족
- 3) **비교시점**의 주요 원재료 가격지표가 **조정요건 이상**(+5%) 상승
 → 납품대금 연동 **조정요건 충족**

4. 납품대금 연동

납품대금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방식, 반영시점에 따라 위탁-수탁기업 상황에 맞춰 납품대금 연동

주요
원재료

가격
지표

조정요건
충족여부

납품대금
연동방식

납품대금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다양한 연동 방식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 (다양한 방식 가능)

Case

1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 × 원재료 중량 + 적정마진 or 기타인정비용

ex. 비교시점의 원재료(동) 가격이 kg당 11,000원, 납품중량 10kg
→ 11,000 × 10kg + 10,000원 = 납품대금 120,000원

Case

2

[서술식] '기준-비교시점 간 가격지표 변동분의 100%를 납품단가 반영'

Case

3

직전 납품가 × { 1 + (변동률 × 원재료 비율 or 중량 × 반영비율) }

ex. 직전 납품단가가 100,000원, 원재료(동) 가격지표가 10% 상승
주요 원재료(동)의 비율은 20%, 납품대금 연동 100% 반영
→ 100,000 × { 1 + (0.1 × 0.2 × 100%) } = 102,000원 으로 조정

납품대금은 언제 반영되는지?

대금 반영시점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시점에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탁기업에 납품대금 적용

ex. 매월 1일

조정일로 부터 7일 후
조정주기 해당 월의 5일
분기 시작일

원재료 가격 변동 조정 후 신규 발주분부터
발주서 별 납품일 2개월 전

[참고] 반영비율

납품대금 연동 반영비율은 100%가 기본이지만
위탁-수탁기업 사정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단, 별점 상황 시 반영비율 50% 이상인 경우만 연동계약으로 인정

*source : 상생협력법 시행령 [별표3] 3.가.6)



Smart Productivity

납품대금 연동제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
컨설팅 분야
안내자료

*한국생산성본부

I. 납품대금 연동제 개요

II. 납품대금 연동 방식

III.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

1.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 개요
2. 지원사업 유형 (2가지)
3. 연동 약정 컨설팅
4. 지원사업 참여신청
5. 전문기관 소개 : 한국생산성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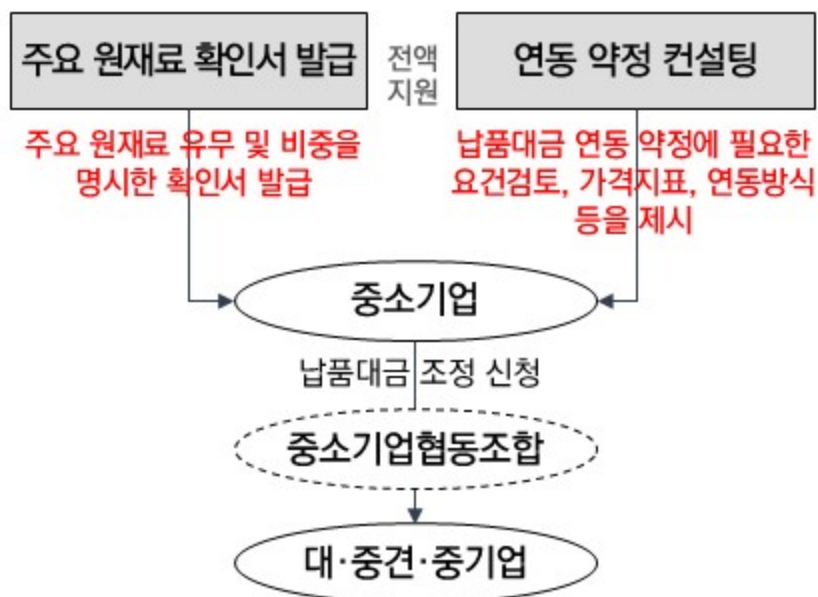
1.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 개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동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하고 확인해주는 전문서비스를 지원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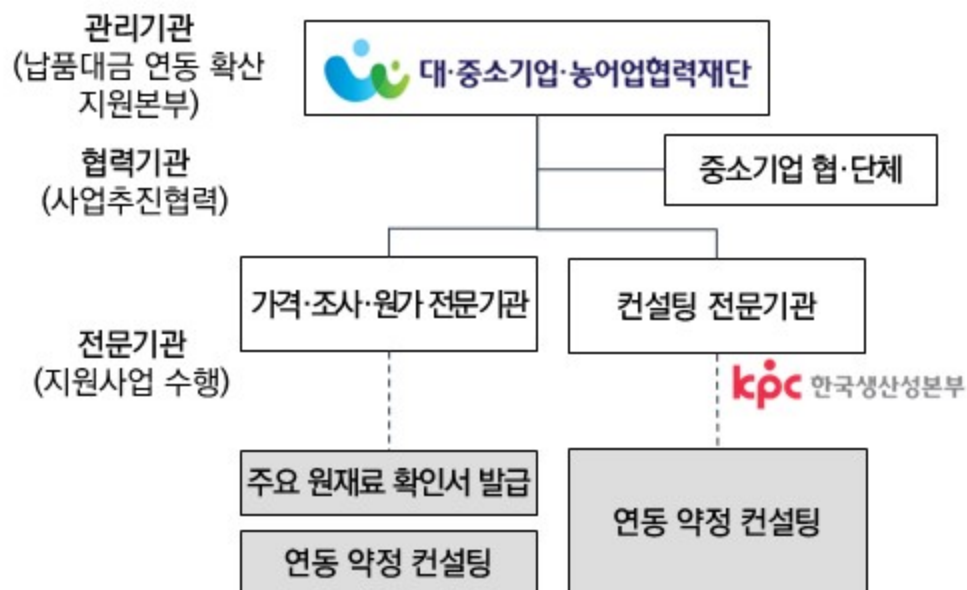
납품대금 연동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전문기관 이란?

사업 추진체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납품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가격·조사·원가 전문기관 및 컨설팅 전문기관이 사업을 수행



2. 지원사업 유형(2가지)

연동약정체결 지원사업에는 주요 원재료를 확인해주는 유형과, 연동 신청요건 검토 등 사전컨설팅을 제공하는 유형이 있음

지원사업 내용은?

지원 유형

- (유형1) 원가분석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증서 발급
- (유형2) 연동 대상, 기준지표, 조정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 범위

[Phase I] 납품대금 연동 요건 검토 등 연동약정 사전컨설팅

지원유형1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지원유형2

연동 약정 컨설팅

[Phase II]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확인, 조정 단계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지?

결과물 예시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납품대금 연동계 주요 원재료 확인서

1. 계약기간
- 최초연도
- 종료연도

2. 품목
- 내
- 외

3. 확인
- 내
- 외

4. 확인
- 내
- 외

5. 확인
- 내
- 외

6. 품수
- 내
- 외

7. 발급

[납품대금 대상업체 산출표]

품명	구분	내역	연동대상 여부	비고
A	원재료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B	원재료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C	원재료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D	원재료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E	원재료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F	원재료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대상 여부 산출표]

구분	품명	구분	내역	연동대상 여부	비고
A	원재료	부품소재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B	원재료	부품소재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C	원재료	부품소재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D	원재료	부품소재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E	원재료	부품소재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F	원재료	부품소재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연동 약정 컨설팅>

2024년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연동계 대상 요건 검토] 1. 요건 검토 결과표(요약)

구분	내역	연동대상 여부	비고
A	원재료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B	원재료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C	원재료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D	원재료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E	원재료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F	원재료	부품소재	연동대상
		부품소재	연동대상

2. 항목별 세부 검토 결과

• 계약기간: 계약기간이 연동계 대상 업체와 동일하거나 연동계 대상 업체보다 길어야 함. 연동계 대상 업체와 연동계 대상 업체 간의 계약기간이 다를 경우, 연동계 대상 업체와 연동계 대상 업체 간의 계약기간이 동일해야 함.

• 품목: 연동계 대상 업체와 연동계 대상 업체 간의 품목이 동일해야 함. 연동계 대상 업체와 연동계 대상 업체 간의 품목이 다를 경우, 연동계 대상 업체와 연동계 대상 업체 간의 품목이 동일해야 함.

• 연동대상 여부: 연동계 대상 업체와 연동계 대상 업체 간의 연동대상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연동계 대상 업체와 연동계 대상 업체 간의 연동대상 여부를 결정함.

• 조정요건 충족 여부: 연동계 대상 업체와 연동계 대상 업체 간의 조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연동계 대상 업체와 연동계 대상 업체 간의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함.

• 납품대금 지급: 연동계 대상 업체와 연동계 대상 업체 간의 납품대금 지급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연동계 대상 업체와 연동계 대상 업체 간의 납품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

3. 연동 약정 컨설팅

연동 약정 컨설팅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을 보고서로 제시

(지원유형2) 연동 약정 컨설팅 이란?

컨설팅 범위

위탁-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연동 요건에 대하여 사전 조사·검토·제시

〈납품대금 연동 약정 기재사항〉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동의 명칭	동 케이블(CC-002)
2. 주요 원재료	동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e-나라지표 주요 원자재가격동향, PP가격
4. 원재료 기준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직전 대금 변경이 있었던 조정일(또는 약정 체결일)의 전 분기(평균) 비교시점: 조정일의 전 분기(평균)
5. 조정요건	3% 이상 또는 -3% 이하
6. 조정주기	분기
7. 조정일	대 분기 첫 달 1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대 분기 첫 달 1일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조정될 납품단가(단위: 1개) = 직전 납품단가 + [(비교시점 동 기준가격 - 기준시점 동 기준가격) × 반영비율(100%) × 동 중량(1ton)]
10. 기타 사항	납품단가는 0.01원 미만 절사

컨설팅을 통하여 무엇을 제시해주는가?

컨설팅 결과내용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보고서로 제시

〈컨설팅 보고서 contents〉

- | | |
|--|---|
| 1. 기업 개요 | 4. 연동제 대상 요건 검토
(1) 요건 검토 결과 요약
(2) 항목별 세부검토 결과 |
| 2. 컨설팅 개요
(1) 컨설팅 주제
(2) 추진배경 및 목적
(3) 컨설팅 추진개요 | 5. 납품대금 등 연동표
(1) 납품대금 등 연동표
(2) 항목별 세부검토 결과 |
| 3. 컨설팅 세부추진일정 및 내용
(1) 세부추진일정
(2) 세부추진내용 | 6.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
| | 7. 이외 기타사항 등 |

4. 지원사업 참여신청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이메일로 사업참여 신청 및 기초자료 제출

지원사업 참여신청 방법은?

지원 대상

*(기본요건)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 (유형1)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지원 : 수탁기업
- (유형2)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수탁기업, 위탁기업

추진 절차

<지원사업 참여 및 추진절차>

추진단계	수행주체
① 참여신청·접수	신청기업→관리기관/전문기관
② 참여기업 선정평가	관리기관
③ 전문기관 매칭	관리기관
④ 기초자료 제출	참여기업→전문기관
⑤ 지원사업 수행	전문기관
⑥ 결과물 도출	전문기관→참여기업
⑦ 만족도 조사	관리기관→참여기업

참여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 제출사항

- 사업참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 참여신청 서식>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추진기관명	ex) ○○○ 협력재단		
신청분야	<input type="checkbox"/>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	<input type="checkbox"/> 연동 약정 컨설팅	
<small>*약 또는 모두 지원 가능</small>	<small>*수탁기업(수급사업자)만 지원가능</small>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설립일자		
주소			
매출액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신청거래 구분	<input type="checkbox"/> 수위탁 거래	<input type="checkbox"/> 하도급 거래	<input type="checkbox"/> 모두 해당
소위타당도거래 시	<input type="checkbox"/> 위탁기업/외사여차		<input type="checkbox"/> 수탁기업(수급사업자)

제공요청 기초자료

- ① 기초자료 (납품대금 연동 희망 수탁거래/계약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 ② 재료비자료 (주요 원재료의 도입가격 등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 ③ 주요 원재료의 규격, 소요량 등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소요량산출표 등)

5. 전문기관 소개 :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산업부 산하 공적유관단체로서 컨설팅, 교육훈련, 연구조사,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등을 수행

업 체 명	한국생산성본부 (KPC : Korea Productivity Center)
사업분야	컨설팅, 교육, 연구조사, 자격 등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설립년도	1957년 8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1957년 8월 ~ 현재(67년)

주요 연혁	1957	KPC 창립(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
	1959	국내 최초 기업진단, 경영자문 및 산업교육 실시
	1961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이사국 가입
	1967	국내 최초 컴퓨터 도입(FACOM-222)
	1975	제1회 생산성대상 시상식 개최
	2006	생산성경영체계(PMS) 인증사업 실시
	2009	세계 최초 국가단위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Korea) 발표
	2011	한국형 제조혁신 방법론(KPS) 개발 및 보급
	2012	지식서비스 업계 최초 연매출 1,000억 달성
	2016	KSX9001(스마트공장 운영 국가 표준모델) 개발 및 보급
	2021	K-ESG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산업통상자원부-KPC)



컨설팅	경영 컨설팅	스마트공장/자동화
	제조혁신/에너지관리	지속가능경영 컨설팅
교육훈련	취업 교육	경영·직무역량교육
	계층리더십 역량교육	평생교육자격연수
	4차산업혁명/스마트공장	온라인교육
연구조사 공익사업	국가생산성대상	국가고객만족지수
	생산성경영인증	APO국제협력
	생산성정책연구	생산성 연구조사

연동약정 컨설팅 주관부서 스마트제조컨설팅센터 전화 02-724-1201

kpc 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컨설팅센터

이인갑 센터장 iglee@kpc.or.kr

이창윤 선임 cylee@kpc.or.kr

조남혁 책임 nhcho@kpc.or.kr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32 생산성빌딩 10층

